

2022.05.27.

임금피크제 효력을 부인한 판결과 시사점

(대법원 2022.0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공인노무사 김재언

➤ 사실관계 및 판단

- 회사는 기존 정년이 61세로 운영되는 사업장이었음
- 회사는 2009년 1월 1일 부터 55세 이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성과연급제 (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음
-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55세 이상 직원들의 월급여는 적게는 약 93만원 많게는 약 283만원이 감소하였음
-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업무수준의 변화나 별다른 보상조치는 없었음
- 55세 이상인 직원들의 업무실적은 51세~54세 직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떨어지지 아니하였음
-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는 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②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제도라 하며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유효하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연령 차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쟁점

- 고령자고용법 제4조4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 판결 요지

- 고령자고용법 제4조4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강행규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임
- 임금피크제등 도입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①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여부 및 그 적정성, ④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됨에 따라 직원들은 55세 이상이 되면 성과에 관계없이 임금이 삭감되었고, 이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함

➤ 판단에 영향을 끼친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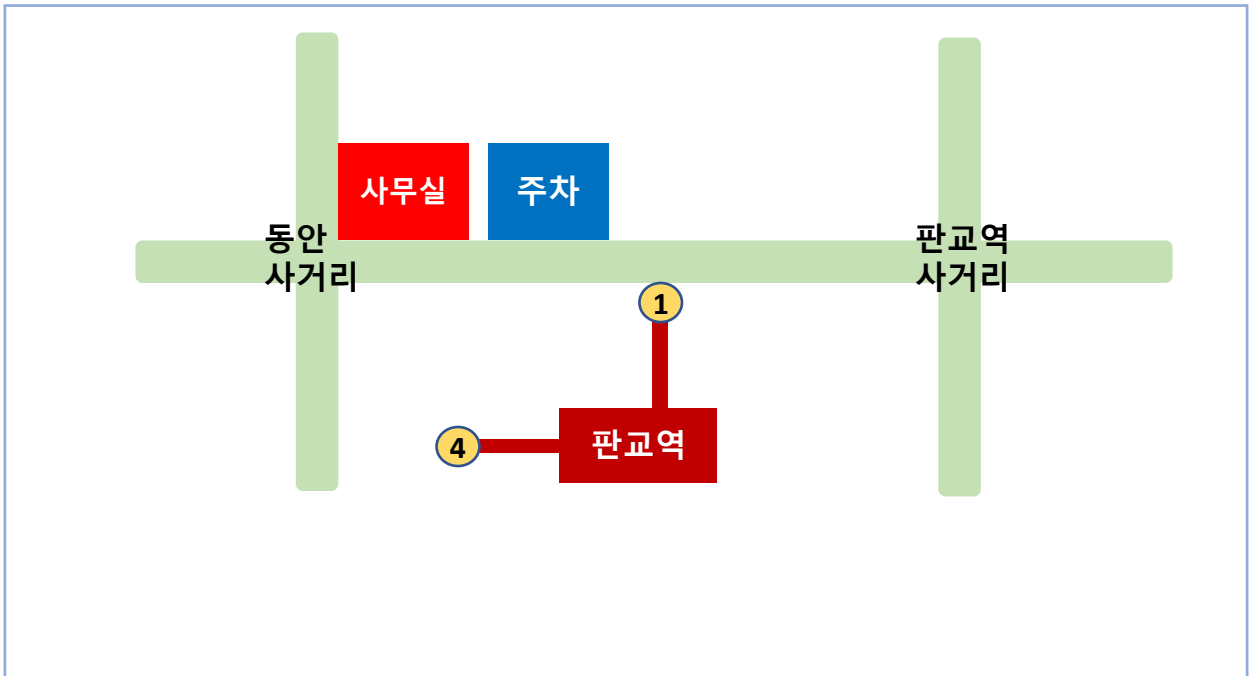
-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은 회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보임
-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이익에 대하여 별다른 보상조치가 없었음
- 55세 이상 직원들과 51세~54세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비교하면, 55세 이상 직원들의 실적이 더 좋았음
-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목표수준이나 업무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었음

➤ 시사점

- 해당 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제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 판결로 의의가 있습니다.
- 그러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단순 인건비 절감에만 방향성을 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로 본 판결이므로,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 특히, 2017년 정년 60세가 법제화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에 대하여 정년연장이라는 대상조치가 있으므로 해당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의 업무의 변화가 큰 차이 없다면 해당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혹은 도입 예정인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 유효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 검토사항

- 1)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무엇인가?
- 2)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가?
- 3)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대상조치가 있는가?
- 4) 임금피크제 전후하여 근로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수준이 변화하였는가?
- 5)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801호 (삼평동, 서건타워)

주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1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지하철 : 신분당선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거리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31-704-1223
팩스 031-8016-3498

양재 모 대표 공인노무사
cpla21@daum.net

김재 연 공인노무사
cplaeony@naver.com

황금 별 공인노무사
golds628@naver.com

안형 근 공인노무사
Cpla_ahg63@naver.com